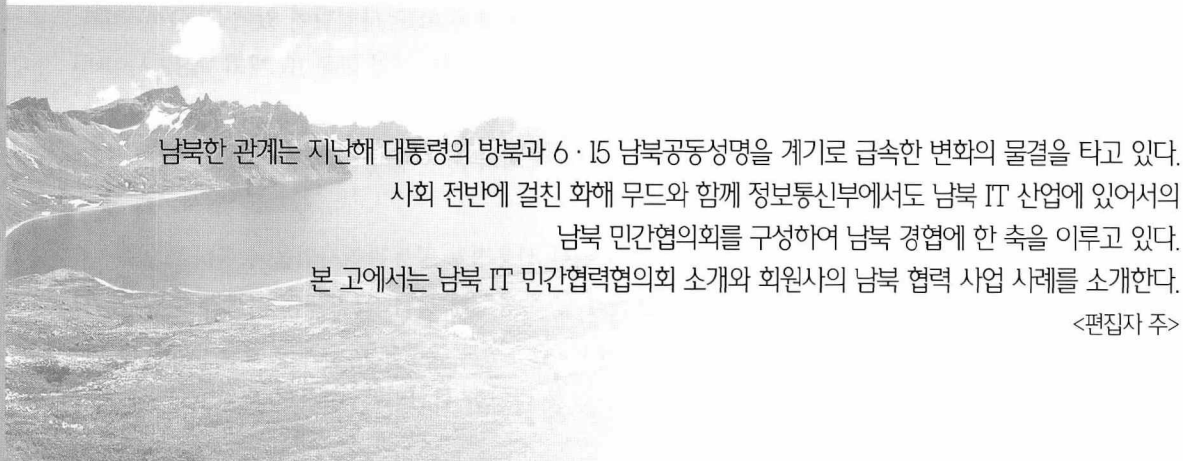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 소개



남북한 관계는 지난해 대통령의 방북과 6·15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화해 무드와 함께 정보통신부에서도 남북 IT 산업에 있어서의 남북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 경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본 고에서는 남북 IT 민간협력협의회 소개와 회원사의 남북 협력 사업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남북경협에 있어서 IT분야의 중요도 인식이 핵심분야로 등장하면서 북한의 경협여건 취약 및 남한 기업의 개별접근이 한계가 있고, 향후 남북경협의 과다경쟁과 중복, 과잉투자 우려, 남북경협관련 업체간 또는 업체와 정부간 긴밀한 협의 및 조정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는 남북경협에 관심 또는 관련 있는 업체 및 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민간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남북 IT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북한진출을 위한 정보교류, 공동협력사업 발굴·체계적 추진 및 대 정부 정책 건의의 장 마련, 업체간 또는 업체와 정부간 긴밀한 협의 및 조정, 향후 남북경협의 업체간 과다경쟁방지 및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난 2월말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제2차 남북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가칭) 설립 추진(안)이 만들어 졌으며, 3월 15일 한국통신, SK텔레콤, 삼성전자, 현대 아산 등 17개 업계·단체가 참석하여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 구성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

민간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남북 IT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북한진출을 위한 정보교류, 공동협력사업 발굴·체계적 추진 및 대 정부 정책 건의의 장 마련, 업체간 또는 업체와 정부간 밀접한 협의 및 조정, 향후 남북경협의 업체간 과다경쟁방지 및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또한 지난 4월 27일에는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 창립총회/세미나를 개최하여 운영규정 및 협의회 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43개 업체 및 단체 회원사가 가입했다.(4.2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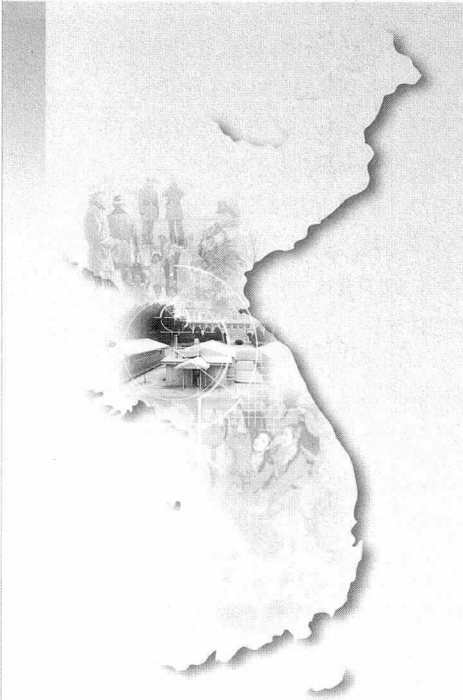
분과별 회원사 현황은 통신서비스 19개사, S/W 19개사, 정보통신기기 14개사, 표준화 9개사(4.26일 기준) 등이다.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살펴 보면, 통신서비스분과(간사기관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북한의 통신서비스 현황 등 정보수집 및 남북한 통신사업 협력사업 방안 모색을, S/W분과(간사기관 : 한국S/W산업협회)는 북한 S/W분야 인력 및 기술현황 등의 정보수집과 S/W교육센터 등 공동 개발사업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분과(간사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한편 북한정보통신기기 현황 등 정보수집 및 정보통신기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및 모색 활동을, 표준화분과(간사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북한의 표준화 추진체계 연구 및 표준기관간 교류와 국제표준화 공동대처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는 먼저 민간단체이니 만큼 IT분야 남북경협관련 민간의 창구 역할 수행 및 정보교류를 중심으로, IT분야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공동진출방안 협의 및 이해관계 조정, 남북경협의 체계적 추진 환경 조성 및 상호협력, 정부에 대한 지원사항 종합 건의, 정부의 민간지원 창구, 남북경협에 관한 법 제도 연구, 남북경협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남북경협에 관련된 학술행사 및 전시회 등 개최, 남북경협에 관련된 국제기관의 협력 및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앞으로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는 남북경협 포털사이트를 운영, 각 분과위원회의 최근정보와 수집정보를 등재하는 한편 일간 및 월간 북한관련 뉴스 취합·정리, 남북경협관련 업체 정보 교류 및 교류의 장 마련, 각 분과위원회의 최근 정보와 수집정보 등재, 남북경협의 성공적 추진사



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정책 건의를 통하여 대북경협사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북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적극 지원 검토,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에 정부가 일정수준 위험 분담 방안 및 지원방안 검토,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서의 IT분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국제협약(베세나르협정)과 북한의 개방수준 등 외부환경의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남북경협의 성공적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장기적 안목에서의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수립, 남북경협 공동진출 방안 발굴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에 회원사로 참여하려면 협의회 사무국(전화 : 02)580-0563)이나 각 분과 위원회 간사기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 회원사 사례 - 기가링크

남북 IT 경협사업에 있어서 한 발 앞선 회사들의 실적과 추진 경과 등은 앞으로의 이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준다.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 정보통신기기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기가링크의 대북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들어 본다.

● 대북 사업 추진 현황

1.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차원에서 북한현지 네트워크 인프라 및 IT 산업동향 정보수집 시작.
2. 북한내의 인터넷산업은 미개척상태이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등 인터넷 산업부문의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3. 금년 1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을 통해 인터넷 및 IT부문에서의 북한의 지대한 관심과 남북 IT 교류의 필요성 확인.
4. 2월 6일부터 5일간 관련업계 인사 7인과 방북하여, IT 부문의 포괄적인 남북협력과 단둥-신의주지역에서의 정보기술지역 조성 사업을 협의하였음.

5. 기가링크는 우선 3월 중으로 북한 평양정보센터내 2곳에 PC 100대 규모의 초고속망 시범사이트 구축을 진행하기로 하고 평양정보센터와 (주)기가링크 간에 합의서 작성.
6. 3월말 방북하여 평양정보센터측과 기술협의 및 시범테스트를 완료하고 100대규모의 장비를 기증, 프로그래밍습속 준공 후 사이트를 구축, 개통기로 함.

● 북한의 네트워크 인프라 현황

■ 망의 이원적 관리(이중네트워크)

- 내부 국가전산망과 국제인터넷망의 분리로 국제인터넷 접근 제한
- 일부 과학기술기관 및 정보기관에만 인터넷 개방(56K 모뎀이용)



■ 국가전산망 <광명> 급속 확장

- 정부주도 망보급 사업 추진
- 최근 2년동안 4.6배 확장(4개도 연결)
- 중국 차이나텔레콤과 광케이블 연결
- 광단국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음

■ S/W, 서비스시스템개발 위주의 정책

- 운영체계, 조선어입력체계, 음성인식 S/W, 3D Animation 개발 집중화

● 초고속망 시범 사업 계획

■ 목 적 : 남북간 IT 기술협력 및 인프라 조성 지원

■ 구축장소 : PIC내 기술봉사소 및 프로그램 강습소

■ 규모 : 100명의 사용자 분

■ 지원 : T-LAN 장비 및 부속 네트워크장비 무상 제공

■ 추진 일정계획

- 3월 말 : 실무기술진 세부협의 및 초기장비 공급 시범 테스트 및 구축기술 이전
- 년 말 : 사이트구축 및 개통식 (남북 IT관련 인사 참여)

● 중장기 사업 계획

■ 1단계(~ 2001말)

- 목적 : 남북 IT 교류 활성화 기반 및 유대 형성
- 최초 시범사이트 구축(100대) 및 기술 교육
- 대상 : 평양정보센터내 기술봉사소, 프로그래밍 강습소

■ 2단계(~ 2002말)

- 목적 : 초고속인터넷망 시범사이트 구축 확산
- 시범사이트의 확산(1,000대)을 통한 당사 인

지도 제고 및 교역 가능성(유상판매)의 확보

- 대상 : IT관련 연구기관(KCC, 중앙과학기술 통보사), 대학(김일성중대, 김책공대), 인민학 습당 등

■ 3단계(2003 ~)

- 목적 : 개발특구(거점도시)중심의 시장 창출
- 평양, 개성, 신의주, 남포 등 주요도시로 초고속망 확장(복합한 체신청과의 긴밀한 유대강화 필요)
- 대상 : 학술연구기관에서 일반기업으로 대상 확대

■ 4단계(2006 ~)

- 목적 : 본격적인 개방화에 따른 인터넷의 활성화
- 폐쇄형 네트워크에서 탈피, 단계적으로 국제망과 연동
- 일반가입자 대상의 인터넷 서비스 및 NI사업 병행 추진

● 향후 필요사항

■ 통일부 사업승인 필요

- 주기적인 기술인력의 교류허가
- 네트워크 장비의 반출(바세나르 협약)

■ 사전 대북경협사업 체계 마련

- 결제관계 및 물물교환시의 국내 판매루트 확보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요청

- 대북경협사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 유관단체 협력

■ Communication Channel 확보 필요